

수입회사, 부정청구방지법에 근거한 내부고발 사건 수 증가 상황에 직면하다

[Neil Ray, Curtis Dombek](#) 작성

2015년 2월 12일 미국 법무부는 미국에 기반을 둔 수입업체 세 곳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부정청구방지법(False Claims Act)에 근거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3백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납부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정부에 의하면 해당 수입업체들은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 허위 신고를 해왔으며 국내 다른 회사들과도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납부를 피하려고 동 관청에 허위 신고를 하도록 공모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거래 중 정부 계약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민간 부문 수입 거래에서 관세를 적게 지불하여 제기된 ‘역’ 부정청구방지법 소송에 해당된다.

미국 법무부에 의하면 해당 업체들은 샤프실 문과 샤프실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압출재가 중국에서 생산된 후 단순히 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수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말레이시아라고 잘못 표기하며 반덤핑 조치 및 상계 관세의 적용을 받는 물품에 대한 ‘우회덤핑’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제조된 알루미늄 압출재의 수입은 2010년부터 반덤핑 및 상계 관세 부과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왔으나 말레이시아에서 동일한 제품을 수입할 경우 해당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합의를 통해 일단락된 이번 혐의는 처음부터 미국 관세청에서 제기한 사안이 아니라, 부정청구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qui tam*) 조항 (*United States ex rel. Valenti v. Tai Shan Golden Gain Aluminum Products Ltd., et al.*, Case No. 11-cv-368 (M.D. Fla.))을 근거로 한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의해 알려졌다. 부정청구방지법은 연방 자금을 허위로 청구한 자 혹은 이번 사건처럼 정부에 정당히 지급해야 할 세금을 탈세한 경우 이러한 기업을 상대로 국민이 정부를 대신해 직접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국가가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인수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동 법은 이러한 내부고발자가 소송으로 인해 회수된 자금에 대하여 일부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건에서 내부고발자는 이번 합의금의 일부인 555,100달러를 수령하였다.

미국 관세 및 국경보호청의 R. Gil Kerlikowske 위원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는 미국 제조업체들을 위한 공정 경쟁을 확보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현재 미국 세관 및 국경보호청은 법

무부, 미국 이민 세관 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국토안보조사청(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미국 상무부 (U.S. Department of Commerce)와 함께 탈세를 근절하기 위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합의 이후 한 수입업체는 해당 수입품은 판매자가 수입에 의해 발생한 세금은 물론 물품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제반 작업에 대해 책임을 지는 ‘Free in Store’ 조건으로 구입하였음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수입업체들은 때때로 신고상 수입업자(importer of record)만이 세관 통관 수속 오류와 관련된 문제에 실제로 노출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 점에 있어서 중요한 경고를 보여준 점 외에도, 내부고발자가 50만 달러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았다는 점은 회사의 세관 신고 관련 부정을 인지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직원들에게 유혹이 될 것은 분명하다. 직원들이 회사의 사기에 관해 그럴듯하게 꾸며 신고하면 어마어마한 내부고발자 포상금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이번 판결 이후 과연 기업들은 그들의 직원들이 계속해서 일상적인 관세 관련 사전 공시(Customs Prior Disclosure)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 특히, 정부가 부정청구방지법 하에서 고의의 기준을 약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말이다.